

한국불교의 승가교육제도

박 선 영

(동국대학교)

《요약》

이 연구는 한국불교에 있어서 승려의 양성을 위한 승가의 교육제도 문제를 대한 불교조계종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에서의 개선점을 제안하려고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석존이 재세했던 초기불교 이래 승려가 되는 입문의 절차인 수계의 절차와 자격의 조건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불교사에서 교육과정과 방법은 어떠한가도 살펴보면서 논의하였다. 아울러 조계종의 범령집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의 학제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해서도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하였다. 이상과 같은 검토와 논의의 결과에 입각하여 현행 한국 승가교육의 개선방향을 결론 삼아 제안하려고 하였다.

I. 논의의 방향

일반적으로 교육제도란 교육의 제반사항을 법률에 의해 조직한 것을 뜻한다. 이는 곧 교육정책의 법률적 규정을 뜻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지속성을 지니는 기본적인 사회제도의 하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규정된 제도는 그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가치로서 “강제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한국불교의 승가교육제도를 확인하고 검토하려 한다. 그리하여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은, 한국불교에도 여러 종단이 정부에 등록되어 있지만, 한국불교를 대표하고 있는 종단은 조계종이라고 판단하고 조계종의 현행 승가교육

제도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검토할 내용은 우선 승가교육의 역사를 개관하기로 한다. 이러한 개관을 통해 출가공동체로서의 승가에서 승가의 구성원에는 어떤 부중(部衆)들이 있으며, 각 부중의 일원이 됨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간명하게나마 살펴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사에서 승려의 교육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도 고찰할 것이다. 이어서, 현행 조계종의 종헌과 종법에 규정된 승가교육의 목적과 기관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교육기관의 성격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나서 결론에 대신하여 “현행 한국 승가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해 연구자의 견해를 개진하려 한다.

II. 승가교육의 역사

불타의 초기불교에서는 출가하여 비구(比丘)의 승려가 됨에 있어서 원래 나이의 제한이 없었다. 성인이나 미성년이나를 막론하고 모두 출가하여 수도자가 될 수 있었다. 누구나 출가하여 수도하겠다고 하면 불타가 “잘 왔습니다[善來]”라고 하여 바로 비구가 되었다. “선래비구(善來比丘)”라는 용어는 이러한 사정을 잘 입증한다 하겠다. 이 밖에 그 어떤 의식도 따로 없었다. 그러나 점차 출가공동체인 불타의 교단이 커짐에 따라 점차 비구가 됨에 있어 의식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복잡한 의식을 만들지는 않았다. 단지 불타(佛陀)와 불타의 가르침인 법 즉 진리(達磨) 및 불교의 공동체인 교단(僧伽)이라고 하는 이른바 “3보(寶)”에 귀의(歸依)하겠다는 공개적인 서약으로써 비구가 되었다.

그러나 아동이 출가하여 성년의 비구와 함께 수도생활을 하는 데에는 여러 무리가 따랐다. 추위와 더위, 허기와 갈증, 모기 등의 여러 독충들을 감당하지 못하며, 특히 매일 오전에 한끼만 식사하는 계율을 지키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나이 20이 차지 않으면 비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미성년의 아동이 출가할 경우, 대덕(大德)의 비구 1인을 스승으로 정하고 “사미10계(沙彌10戒)”¹⁾를 주어 견습의

1) [사미 10계의 계목(戒目)]: (1)살생하지 말라, (2)도둑질 말라, (3)사음(邪淫)하지 말라, (4)거짓말

비구인 사미(沙彌)가 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사미는 자기의 스승으로부터 비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미성년의 자식이 출가한 것을 슬퍼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한 장로의 비구가 어린 출가자를 데리고 결식하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이를 비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부모의 허락이 없는 미성년자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도록 했고, 12살 미만의 어린이 출가를 금하였다. 단 12살 미만이라도 고아로서 계율을 지킬 수 있는 어린이에게는 예외로 출가가 허락되었다(朴先榮, 1981: 153-156; 朴先榮, 昭和60: 155-158). 한편 출가공동체인 승가(僧伽)에서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타와 그 제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의 계를 정하기 시작하였다. 불교의 계율은, 이와 같이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계기로 하여 교단 구성원들이 함께 정한 이른바 “수범수제(隨犯隨制)”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계를 받는 절차와 의식(儀式)도 점차 규범화된다. 다시 말해서 비구와 비구니 및 식차마나 그리고 사미와 사미니의 계를 받는 수계(受戒)와 계를 주는 수계(授戒)의 의식(儀式)도 정립된다(T.1428 ‘vol.22’ 四分律31-36: 779a-830a).²⁾

불교에서 출가한 수행자(修行者)는 남성의 비구와 여성의 비구니, 이 비구와 비구니가 되기 위한 견습의 준비과정에 있는 남성의 사미와 여성의 사미니, 그리고 사미니와 비구니의 중간단계로서 비구니가 갖추어야 할 여러 사항을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식차마나의 5부류가 있다. 이 가운데 승려인 비구와 비구니의 계는 “열반을 성취하기에 가장 가까운 조건을 잘 갖춘 계”라는 의미에서 “구족계(具足戒)”라고 한다. 이들의 계를 간단히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구의 구족계]: (1)4바라이, (2)13승가바시사, (3)2부정, (4)30니살기바일제, (5)90바일제, (6)4바라제제사니, (7)100식차가라니, (8)7멸쟁의 총 8범주 250계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1)4바라이(波羅夷: pārājikā)의 경우 바라이는 “바라이범”이라고도 하며,

말라, (5)술먹지 말라, (6)높고 넓은 큰상에 앉거나 눕지 말라, (7)몸에 화만(華鬘)이나 영락으로 장식하거나 향유를 바르지 말라, (8)스스로 가무하거나 이를 일부러 가서 보지도 듣지도 말라, (9)금, 은, 돈, 보배를 지니지 말라, (10)“때 아널 때[午後]”에 식사하지 말라.

2) 여기에서 “T번호”는 《大正新修大藏經》에 수록된 문헌의 번호이고, ‘ ’ 안의 “vol.번호”는 이 대장경의 제책순서에 따른 번호이다. 그리고 문헌의 이름 끝에 붙어 있는 숫자는 문헌 안에서의 “卷번호”이며, “a, b, c”는 각각 “상, 중, 하”단을 가리킨다. 위 대장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같다.

단두(斷頭)나 불공주(不共住) 등으로 한역(漢譯)된다. 이 바라이법을 범하면 영원히 비구의 자격이 박탈되고 출가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가장 엄중한 계율이다. 비구의 구족계에서는 성적인 부정행위[邪淫], 도둑질[偷盜], 살생, 거짓말[妄語]의 4바라이법을 규정하고 있다(T.1428 ‘vol.22’ 四分律1-2: 569c-579a; 李智冠, 1976: 57-88). (2) 13“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 saṃghāvaśeṣa)”에서 승가바시사는 승잔(僧殘)으로 한역(漢譯)되며, 자위행위나 여인에의 애무 등에 대한 13가지의 계가 있다. 이는 4바라이 다음가는 무거운 범계(犯戒)이다. 그러나 영구히 비구의 자격을 박탈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4바라이와는 달리 20명 이상의 비구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진심으로 참회하여 허락을 얻으면 비구의 자격은 유지된다(T.1428 ‘vol.22’ 四分律2-5: 579a-600b; 李智冠, 1976: 89-118). (3) 2“부정법(不定)”은 으스스한 곳에서의 행위나 노지(露地)라 하더라도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의 사건으로 범계 여부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경우 본인이 자백하면 그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2가지 계가 제시되어 있다(T.1428 ‘vol.22’ 四分律5: 600b-601b; 李智冠, 1976: 119-122). (4) 30“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 ‘naiḥsargika-pāyattika’)”에서 니살기바일제는 사타(捨墮)로 한역된다. 주로 옷이나 공양, 그릇, 약품 등 물건 때문에 잘못을 범한 것인 바, 이는 물건을 비구들의 공동체에 내 놓고 참회해서 탐욕을 버리게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옷을 오랜 기간 지니는 행위 등 30가지가 있다(T.1428 ‘vol.22’ 四分律6-10: 601c-633c; 李智冠, 1976: 123-166). (5) 90“바일제(波逸提. pāyattika)”에서 바일제는 타(墮) 또는 단타(單墮)나 단제(單提)로 한역된다. 니살기바일제가 주로 물건을 둘러싸고 야기된 잘못이지만, 이 바일제는 물건과는 관계가 없는 언어나 행동 또는 용심(用心)이나 생활규범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계이다. 여기에는 남을 헐뜯거나 이간질 또는 여인과 한 방에서 자는 등 90가지가 있는 바, 다른 사람에게 참회하면 된다(T.1428 ‘vol.22’ 四分律11-19: 634a-695c; 李智冠, 1976: 167-264). (6) 4바라제제사니(波羅提舍尼. pratideśanīya)에서 바라제제사니는 향피회(向彼悔), 대타설(對他說) 등으로 한역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범행은 모두 공양(供養)을 받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 바라제제사니에는 마을 집에 있으면서 친척이 아닌 비구로부터 밥을 받는 행위 등 4가지가 있으며, 범했을 경우 1인의 다른 비구에게

참회하면 된다(T.1428 ‘vol.22’ 四分律19: 695c-698a; 李智冠, 1976: 265-272). (7)100 “식차가라니(式叉迦羅尼, *sikhakaraniya*)”에서 식차가라니는 응당학(應當學), 수계(守戒) 등으로 한역된다. 다른 계에 비해서 비교적 가벼운 잘못으로, 비록 범했더라도 마음으로 참회하고 잘 배울 것을 다짐하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100가지가 있으나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10종류가 된다. 즉, 착의(着衣), 입촌(入村), 좌기(坐起), 식사, 절식과 식사 때 사용하는 그릇의 간수[護鉢], 대소변, 설법, 불탑(佛塔), 행각(行脚) 즉 여행, 나무에 오르되 한 길 이상 오르는 것 등이다(T.1428 ‘vol.22’ 四分律19-21: 698a-713c; 李智冠, 1976: 273-356). (8)7멸쟁(滅諍)은 공동체에서 시비와 논란이 야기되면 이를 깨끗하게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7가지가 제시되어 있다(T.1428 ‘vol.22’ 四分律21: 713c; 李智冠, 1976: 357-365).

[비구니의 구족계]: 비구계 가운데 “(3)2부정”이 없는 (1)8바라이, (2)17승가바시사, (3)30니살기바일제, (4)178바일제, (5)8바일제제사니, (6)100식차가라니, (7)7멸쟁의 총 7범주 348계로 되어 있다(李智冠, 1977). 이 비구니계 7범주의 성격은 비구계 8범주 가운데 “(3)2부정(不定)”을 제외한 동일한 명칭의 범주와 각각 같은 성격의 것이다(T.1428 ‘vol.22’ 四分律22-30: 714a-778b). 그러나 이 구체적인 계목의 수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를 가지고 출가자의 계율에 남녀의 성차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왜 그러한가. 이들의 구족계는, 이미 언급했듯이, 모두 수도와 전도 및 재가자의 공양, 기타 공동생활들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따라 제정한 이른바 “수범수제(隨範隨制)”의 규범이기 때문이다. 단 이는 당시 남성중심의 사회와 문화 풍토에서 여성으로서 출가하여 수도한다는 것은 그토록 시비가 많이 일어날 만큼 실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 이 문제는 별도의 심도 있는 연구가 요청되는 것이겠으나 - 하는 추측은 해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비구와 비구니는 물론이고 사미와 사미니 및 식차마나의 수계 부적격자의 기준으로서 “13중난(13重難)”과 “16경차(16輕遮)”라는 것이 있다. “사미” 및 “사미니와 식차마나”는 각각 “비구”와 “비구니”가 되기 위한 수습(修習)의 준비과정에 있는 바, 비구와 비구니의 수계 부적격자 조건에 이 13중난과 16경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중난(重難)]: 비구 비구니가 될 수 없는 조건으로 (1)이미 출가하여 불계(佛戒)를

받은 다음 성적 부정이나 살인 또는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범한 일이 있다면 이는 불법의 변경 밖으로 밀려난 죄라고 보아 “변죄(邊罪)”라고 하는 바, 이러한 변죄를 범한 자, (2)청정(淸淨)한 비구니 - 비구니의 경우 비구 - 를 범한 적이 있는 자, (3)비구계를 - 비구니의 경우 비구니계를 - 설하여 수계하는 것을 도청하고 나도 비구 또는 비구니라고 사칭하는 “적주(賊住)”를 한 적이 있는 자, (4)원래 외도(外道)로서 불법에 들어와 불계(佛戒)를 받았던 자가 다시 외도에 나갔다가 또 수계하려는 자, (5)황문(黃門) 즉 성적 불구자, (6)아버지를 살해한 자, (7)어머니를 살해한 자, (8)성자(聖者)인 아라한(阿羅漢)을 살해한 자, (9)파승(破僧) 즉 출가공동체를 분열시킨 적이 있는 자, (10)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적이 있는 자, (11)비인(非人) 다시 말해 하늘의 존재나 귀신이 변하여 사람의 모양을 한 자, (12)용이나 짐승이 변하여 사람의 모양을 한 자, (13)이형(二形) 즉 남녀 양성인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T.1428 ‘vol.22’ 四分律35: 814c).

※[16경차(輕遮)]: 16경차(輕遮)는 비구나 비구니가 됨에 부적격한 조건으로 (1)자기의 법명을 모르는 자, (2)화상(和尚)의 법명을 모르는 자, (3)나이 20이 안된 자, (4)“삼의(三衣)”³⁾가 구비되지 않은 자, (5)“발우(鉢盂)”⁴⁾를 갖추지 못한 자, (6)아버지의 허락을 얻지 못한 자, (7)어머니의 허락을 얻지 못한 자, (8)채무가 있는 자, (9)노예, (10)관리, (11)남자가 아닌 자 - 비구니의 경우 여자가 아닌 자 -, (12)옴병이나 문둥병 환자, (13)창종(瘡腫)이 있는 자, (14)허영계 가루가 쏟아지는 마른버짐 환자, (15)조갈증 환자, (16)미치광이 간질병 환자가 여기에 해당한다(T.1428 ‘vol.22’ 四分律35: 814c-816c).

불교의 수계의식은 일반적으로十方三世(十方三世)의 불보살(佛菩薩)과 불법(佛法)을 옹호하는 여러 천신(天神)과 선신(善神)들이 강림하여 이 수계의식을 감찰하고 증명하며 호계(護戒)해 줄 것을 청하는 청성(請聖)의 의례, 이 수계의식을 주관하고 계를 선설(宣說)해 줄 고덕(高德)의 율사(律師)를 청하여 모시는 청사(請師)의 의례, 그리고 계를 선설(宣說)해 줄 것을 간청하는 걸계(乞戒)의 의례, 수계의 의의와 마음가짐에 대한 깨우침을 열어 인도하는 개도(開導)의 의례, 수계자(受戒

3) 비구가 입는 세 가지 옷으로, (1)마을이나 궁중에 들어갈 때에 입는 9조(條)의 “승가리(僧伽梨: 大衣), (2)예불이나 독경 등 불교의례를 할 때 입는 7조 이상의 가사로서 울다라승(鬱多羅僧: 上衣), (3)절에서 작업을 할 때나 상(床)에 누울 때 입는 5조(條)로 만든 가사인 “안타회(安陀會)”의 세 가지를 말한다.

4) 불교의 승려들이 공양 즉 식사할 때 사용하는 식기.

者)로서의 결격사항은 없나를 물어 확인하는 문난(問難)의 의례, 계를 선설(宣說)하고 이 계를 신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는가 하는 것을 물어 확인한 다음 계를 주는 수계(授戒)의 의례, 마지막으로 출가한 수행자로서 자신의 완성과 중생구제를 발원(發願)하고 이 수계와 발원의 공덕을 시방삼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 전향(轉向) 시키는 회향(回向)의 의례로 끝난다. 사미나 사미니가 승려인 비구나 비구니가 되기 위한 예비단계로서의 전습승려인 점을 고려한다면 사미계나 사미니의 수계의 식은 출가하여 승려생활에 들어가기 위해 최초로 승려생활의 장(場)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의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비구계나 비구니계의 수계의 식은 이 문안에 들어가는 의식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세속을 떠나 출가자의 첫발을 내딛는 사미에게 출가자는 부모와 국왕에게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치고, 마지막으로 부모와 국왕 -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는 국가 - 에 감사하고 절을 하도록 개도(開道)하고 있다.⁵⁾

한편, 비구계나 비구니계의 수계의식에서는 다른 수계의식과 현격하게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주로 갈마 즉 의식(儀式)의 작법(作法)에서 나타난다. 불교에 여러 수계의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비구계와 비구니계의 수계의식은 서가모니불, 즉 석존(釋尊) 재세시(在世時)의 초기불교 이래 가장 엄정하게 율장(律藏)의 규범에 따라 시행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석존 재세시부터 승가에는 대소의 모든 일이 공동의 논의와 동의를 거쳐 결정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석존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독선적이거나 독단적인 결정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모든 불교교단에 계승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대중공사나 산중공사는 바로 그 실례(實例)이다. 비구계나 비구니계의 수계의식에는 전계(傳戒), 교수(教授), 갈마(羯磨=作法)의 3사(師)와 이 수계의식을 감찰하고 증명하는 7증사(證師)의 이른바 “삼사칠증(三師七證)”의 제도가 있는 것도 석존 재세 이래의 규정인 바, 이 또한 승가의 이러한 정신의 소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의식의 주관자인 전계화상(傳戒和尚)은 수계의식의 공식 석상에서 수계의 작법절차(作法節次) 진행과 의도를 다른 9사들에게 동의 받고 화합계(和合偈)를 함께 창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 공공적인 수계의식에서 중요한 대목마다 묻고 확인하며 보고하고 동의되어서

5)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인 사미 수계의식]”에서는 “회향계” 이후 수계한 사미를 대중 앞에 정좌하도록 하고 부모가 아들 사미에게 큰절을 하도록 되어 있다(安震湖, 1972: 下編. 129).

진행된다. 이 점이야말로 불교의 수계의식이 지니는 독특한 종교문화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계의식은 그 자체가 불교적인 새로운 삶 내지 문화의 장으로 들어가는 입문의 의식이기도 하다. 그 삶은 한 마디로 말해서 수행과 구제이다. 이제까지의 쾌락과 자기중심의 삶으로부터 청정과 이타의 삶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전환의 공덕을 시방삼세의 모든 생명체에 되돌리는 마지막의 회향 속에서 수계자 개개인의 전환은 우주와 함께 공유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불교의 출가자 수계의식은 그 자체가 각각 예비승려와 승려의 단계에 따른 입문의 절차이며, 그 입문의 절차 자체가 자신의 수행(修行)과 중생의 제도(濟度)를 위한 불교계의 지도자로서의 필수적인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 수계의식의 절차는 불타 재세시(在世時) 이래 여러 율장(律藏)에 이른바 “수계진도(受戒進度)”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중국을 통해 한국에 전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현행하고 있는 사미와 사미니의 수계의식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진호(安震湖)의 “석문의범(釋門儀範)”⁶⁾에 의거했으나(安震湖, 1966: 下編 123-130), 근래 조계종에서는 대표적인 율사(律師) 가운데 한 분인 일타(一陀)스님이 편역(編譯)한 “수계의범(受戒儀範)”에 의거하여 모든 수계의식을 행하고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수계의범의 저본은 “동치(同治) 9년 항성(杭城) 해조사(海潮寺) 청도(淸道)”의 발문(跋文)이 게재된, 그리고 “소경사(昭慶寺) 혜공경방(慧空經房)에서 인조(印造)한 “견조 삼단전계정범 초단법의(見祖 三壇傳戒正範 初壇法儀)”, “태산 삼단전계내집(台山 三壇傳戒內集)”, “견조 삼단전계정범 삼단법의(見祖 三壇傳戒正範 三壇法儀)”, “견조 삼단전계정범 홍계비니(見祖 三壇傳戒正範 弘戒毘尼)”의 4책이라고 한다.

한편, 한국불교사에서 한국 고대 승려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문헌은 일본의 고승 엔인(圓仁)이 중국 당나라에 들어가 성지들을 순례하고 불법을 탐구하면서 보고들은 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일기인 “입당구법 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라 할 것이다. 엔인 일행은 한 동안 산동반도의 적산(赤山)에 신라의 장보고가 세운, 신라인 거류지의 신라 승려들 사원인 법화원(法花院)에서 행해지고 있던 “적산원강경의식(赤山院講經儀式)”과 “신라일일강의식(新羅

6) 이 “釋門儀範”의 초판은 원래 1931년에法輪社(前 卍商會)에서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설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一日講儀式)” 및 “신라송경의식(新羅誦經儀式)이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다(圓仁: 207상단-208하단). 이는 서기 839년의 사실로서, 여기에서의 교육의 방식은 근세조선 후기에 점진적으로 정비되어 현재에 이른 강원(講院)의 - 뒤의 “Ⅲ.현행 한국의 승가교육제도” 가운데 “2.승가교육의 내용과 운영”의 “나)승가대학[講院]”에서 확인될 수 있는 운영 및 방법을 검토하겠거니와 - 그것과 거의 같다(圓仁: 207상단-208하단; 朴先榮, 1990: 108-113; 朴先榮, 平成10: 75-78).

적산 법화원과 같은 승려교육의 제도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을까. 이 문제를 검토할 만한 사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료에 의해 확인되는 불교의 최초 한국전래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의 일이다. 그리고 이 전래와 수반하여 경전을 강의하고 해설하는 활동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강경의 자리가 차츰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6세기 중엽에 시작되는 대승불교 중심의 백화난만한 교학불교의 황금기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적산 법화원에서 볼 수 있는 통일신라의 강경의식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정착하여 제도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의 해명에는 중국의 승려교육제도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불교학계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전연 없어 아쉽기만 하다. 어쨌든 적산 법화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일신라의 승려교육제도가 후삼국과 고려 그리고 근세조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사회적 환경과 불교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화를 서서히 거치면서 근세조선 후기에 들어서서 점차 정비되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른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강원제도가 정비되어 정착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제 한국불교사에서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강원교육의 제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강원의 독특한 “논문강(論問講)의 교수-학습 체제”가 언제 시작되었을까. 확실하지 않으나, 이미 고인이 되었으나, 한국 현대불교계에서 제1의 전통적인 학승이었다 할 운허(耘虛)스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환성지안(喚惺志安: 1664-1729)선사(禪師)가 전라북도 금산사에서 1000여명의 학인(學人)을 제접(提接)할 때였다고 한다(李智冠, 1981: 73). 이를 계기로 독서파(讀書派)의 사미파(沙彌科) 사집파(四集科), 간경파(看經派)의 사교파(四敎科) 대교파(大敎科) 그리고 격외파(格外科=隨意科)가 성립되게 되고, 이와 함께 각 단계에 따른 교과도 정비되

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16세기를 전후하여 근세조선의 벽송지엄(碧松智嚴: 1464-1534)이 도서(都序), 절요(節要), 선요(禪要) 순서로 가르치기로 했으며(李智冠, 1981: 73), 그 후 월담설제(月潭雪霽: 1632-1704) 때에 이른바 대회(大會)라고 하는 개방적 교육기관을 개설하면서 오늘날의 강원 교과과정이 정비되었다고 한다. 다만 이 경우 사교과에서는 능엄(楞嚴)·법화(法華)·금강(金剛)·원각(圓覺)으로 하고 대교과는 화엄(華嚴)·전등(傳燈)·염송(拈頌) 등으로 했다는 것이다(李智冠, 1981: 73). 그 뒤 얼마 지나 법화는 수의과로 돌리고 기신(起信) 사교에 넣었다고 한다. 따라서 현금의 한국강원의 교과과정은 월담설제 때에 개편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 한다(李智冠, 1981: 73).

Ⅲ. 현행 한국의 승가교육제도

1. 승가교육의 목적과 기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宗憲) 제2조에 의하면, 조계종의 종지(宗旨)는 “석가세존(釋迦世尊)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奉體)하며 직지인심(直旨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곧 교조 석존이 기렸던 자기완성과 중생구제를 선(禪)의 수행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장엄(莊嚴)함을 지향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종헌 제3조에서는 “소의경전(所依經典)은 금강경과 전등법어(傳燈法語)로 한다.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 지주(持呪) 등은 제한치 아니한다”라고 하여 역사적으로 통불교적인 성격의 전통을 살리려 하고 있다. 한편, 종단의 구성은 승려인 비구와 비구니, 그리고 남자신도인 우바새와 여자신도인 우바이의 4부대중(部大衆)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조계종 법령집⁷⁾: 종헌 제8조). 조계종의 중앙 행정기구로는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호계원(護戒院)의 4원이 개설되어 있다(조계종 법령집: 제9장-12장).

7) 여기에서 “조계종 법령집”은 온전하게는 불기 2539(1995)년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발행한 “대한불교조계종 법령집”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중단의 “승려법”에 의하면, 사미계와 사미니계를 받으려는 자는 학력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는 자, 연령 15세 이상으로서 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있다(조계종 법령집: 승려법 제7조). 그러나 결격사유로서 실질상 속세관계를 끊지 못한 자, 금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형법상 피의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중풍이나 나병 또는 백치나 중성 혹은 불구자, 난치 혹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렸거나 신체조건이 승가로서의 위신상 부적당한 자, 파렴치범의 전과자를 규정하고 있다(조계종 법령집: 승려법 제8조). 뿐만 아니라, 사미와 사미니가 되려는 자는 승랍(僧臘) 10년 이상이며 연령 30세 이상의 생존자로 사승(師僧) 1인을 정해야 하고, 사승은 그 도제(徒弟)를 책임지고 보호 교도해야 하며 도제는 사승의 교도에 순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조계종 법령집: 승려법 제9조). 그리고 승려의 정의는 구족계를 수지(受持)한 비구와 비구니를 말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이 승려법의 제정 목적은 승려가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이고 봉사자이며 성직자로서 고매한 인격과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 평소 언행에 대중의 사표가 되고 불타의 구세원력(救世願力) 실천자로서 수행(修行)과 전법(傳法)을 통하여 불국토(佛國土) 건설의 사명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조계종 법령집: 승려법 제2조).

조계종의 교육법에는 “종단교육은 부처의 혜명(慧命)을 잇고 법을 전해 중생을 제도하는 근본이념 아래 모든 종도(宗徒)에게 깨달음을 성취하고 보살도(菩薩道)를 실천함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 불국토(佛國土) 실현에 이바지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조계종 법령집: 교육법 제1조)고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교육방침은 삼보(三寶)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보살도 실천자로서 원력(願力)을 심어 주며, 불타의 교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설(敎說) 대로 수행(修行)하며 불법을 생활 속에서 체현케 하며, 교법의 이해와 수행(修行) 전법(傳法)을 하나 되게 하고, 역사를 바로 보는 안목과 시대에 맞는 방편으로 수순중생(隨機順衆生)하고, 인천(人天)의 사표로서 고매한 품성과 지혜를 갖추어 중생을 요익(饒益)하고 사회를 구제토록 하며, 신명을 아끼지 않는 호법정신(護法精神)으로 교단과 불법(佛法)을 위해 헌신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조계종 법령집: 교육법 제2조).

조계종의 교육기관은 1)기초교육기관으로서의 행자교육원(行者教育院). 2)기본교

육기관으로서의 승가대학. 3)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학림(學林), 승가대학원, 율원(律院), 선학연수원(禪學研修院). 4)재교육기관으로서의 중앙연수원. 5)특수학교를 두고 있다(조계종 법령집: 교육법 제47조). 이러한 교육기관은 중앙의 교육원이나 교구본사 또는 사찰이 설립하되, 그 교육기관의 설립인가나 폐지 또는 설립자의 변경 등은 조계종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원장과 총무원장의 인가 내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교육원장은 당해 교구본사의 주지에게 그 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조계종 법령집: 교육법 제48조-제50조). 그리고 교육부에는 총무국과 교육국 및 연수국을 두고 있으며, 교육부의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불학연구소(佛學研究所)를 설치하고 있다(조계종 법령집: 교육법 제2장 제1절 총칙-제6절 불학연구소). 이렇게 볼 때 조계종의 기간학제는 행자교육원과 승가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학제에 속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이 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각 교육기관의 성격과 교육목적 및 수학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행자교육원

행자교육원은 발심출가(發心出家)하여 득도수계(得度受戒)코자 하는 남녀 행자(行者)들에 대한 승려의 기본자질을 갖추어 사미니 사미니의 계를 수지(受持)할 수 있도록 초급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종단의 상설기관이다(조계종 법령집: 교육법 제52조). 이러한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서 (1)행자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교학의 이해, (2)출가수행자(出家修行者)로서 기초적인 계율의 학습과 수련, (3)종교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종교원리, (4)예참(禮懺)과 기본 불교의식의 수련, (5)보살도 실현자로서 원력 수립을 정하고 있다(조계종 법령집: 교육법 제53조). 수학의 자격은 (1)연령 15세 이상 50세, (2)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행자로서 출가본사(出家本寺)에서 5개월 이상 교육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승려법 제8조”에 의해 사미니 사미니의 계를 받을 수 없는 자는, 당연한 일이겠거니와, 수학할 수 없다(조계종 법령집: 교육법 제55조).

2)승가대학

승가대학은 행자교육을 이수한 사미와 사미니에 대해 비구와 비구니로서의 필요

한 자질을 갖추게 하고 인천(人天)의 사표로서 지혜와 원력을 함양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상설기관으로, (1)조계종지(曹溪宗旨) 체득, (2)원시경전과 대승경전을 망라한 체계적인 경전교육, (3)교학의 이해와 수행전법을 함께 하는 교육, (4)율장(律藏)의 학습 및 수련, (5)불교사상사와 종사(宗史)에 대한 바른 이해, (6)제종(諸宗)의 종지(宗旨) 학습, (7)선(禪)과 염불의 실수(實修), (8)역사와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불교적 시각과 방법으로 조명하고 해결하는 교육, (9)수행자로서 필요한 일반교양과정의 이수를 교육의 목표로 정하고 있다(조계종 법령집: 교육법 제65-제66조). 수도권에 정부 인가의 4년제 대학으로 1개소의 중앙승가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에 4년제의 여러 승가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바, 중앙승가대학교와 지방의 승가대학은 기본 의무교육기관으로 그 등급을 같이 한다(조계종 법령집: 교육법 제67조). 지방의 이러한 승가대학은 근세조선 후반기에 현재의 교육과정을 확립한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승려교육기관인 강원(講院)이다. 규율이 대단히 엄정하게 확립된 가운데 한문으로 된 불교전적을 교재로 하고 있다. 한편, 승려법에 의하면 식차마나니 - 줄려서 식차마나 - 와 사미, 사미니가 기초선원과정을 이수하면 승가대학에서 수학하지 않아도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하고 있다(조계종 법령집: 승려법 제16조 제②호). 그리고 선원법(禪院法)에 의하면 선원에는 4년제의 기초선원과 전문선원으로 대별(大別)되며, 전문선원에는 결사선원(結社禪院), 총림선원(叢林禪院), 산문폐쇄선원(山門閉鎖禪院), 특별선원, 연수선원(研修禪院)의 구분이 있다(조계종 법령집: 선원법).

3)전문교육기관

가)학림(學林)

학림은 기본 의무교육을 다시 말해 승가대학을 수료한 비구와 비구니를 대상으로 경전의 심오한 연찬을 통해 불전의 지혜를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총림(叢林)”⁸⁾ 기타 본말사(本末寺)에 설치된 특징의 교학(敎學)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며, (1)특정의 불전(佛典)과 어록(語錄)의 체계적 연구, (2)특정 교학의 전문적 연구, (3)경학자(經學者) 및 역경사(譯經師) 양성, (4)이론 교육과 수행(修行)의 일체화를 그 목표로

8) 조계종의 종헌(宗憲) 제102조에 의하면, 총림이란 종합 수행도량(修行道場)으로 선원(禪院), 강원(講院=僧伽大學), 율원(律院), 염불원(念佛院)을 두도록 되어 있다.

하고 있다. 승가대학이 없는 교구에는 의무적으로 1개소 이상의 학림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조계종 법령집: 교육법 제78조-제80조).

나)승가대학원

기본 의무교육과정을 즉 승가대학을 수료한 비구와 비구니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경전과 교학을 깊이 연찬케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상설기관으로, (1)불교학, 불교사상사의 전문적 연구, (2)불교교리의 체계화, (3)교수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 승가대학원은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조계종 법령집: 교육법 제87조-제89조).

다)율원(律院)

기본 의무교육과정을 즉 승가대학을 수료한 비구와 비구니에게 율장(律藏)을 전문적으로 연구케 하며, 청정지계(淸淨持戒)의 가풍(家風)을 확립하게 하는 상설 교육기관으로서, (1)율장의 전문적 연구, (2)습의(習儀)와 예참(禮懺)의 올바른 전승, (3)율학(律學)을 전승할 율사(律師)의 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율학 또한 교육원장이 본말사(本末寺) 가운데 적합한 곳을 지정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조계종 법령집: 교육법 제92조-제94조).

라)선학연수원(禪學研修院)

기본 의무교육과정을 즉 승가대학을 수료한 비구와 비구니를 대상으로 선(禪) 수행(修行)의 체계화와 선리(禪理)의 깊은 탐구를 위해 선학(禪學)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상설기관으로, (1)선학 연구, (2)선사상사 연구, (3)선교일치(禪敎一致)의 가풍(家風) 확립, (4)선(禪)의 실참실수(實參實修)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선학연수원 또한 교육원장이 지정한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조계종 법령집: 교육법 제98조-제100조).

4)중앙연수원(中央研修院)

이 중앙연수원은 비구와 비구니의 보충교육, 종단 요원을 위한 연수교육 및 종단 업무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종단 요원의 기능향상과 종단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상설된 재교육기관으로, 이 중앙연수원도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조계종 법령집: 교육법 제105조-제106조).

5) 특수학교

여기에서 특수학교란 종도(宗徒)들에게 불교문학, 불교미술, 불교음악(현대음악과 범패), 불교건축 등 예술분야와 포교에 필요한 신문, 방송, 영상 등 전문분야에 관한 교육과 보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상설기관이다(조계종 법령집: 교육법 제111조).

※[검토]: 우선 교육법 제1조에서 밝힌 종단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은 종헌에 규정된 종지(宗旨)와도 잘 상응하고, 논리적 모순도 나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제2조의 교육방침도 교육학의 안목으로 보아도 비교적 적절하게 진술되어 있다. 그러나 각 교육기관에 가면 목표진술이 전연 적절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교육목표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목표란 원래 교육목적을 보다 구체화하여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수준 내지 도달점을 뜻한다. 하나 하나 다 지적하는 것을 피하고 각 교육기관별로 하나씩만 예시한다면, 행자교육원의 경우 “---기초적인 계율의 학습과 수련”은 교육방침의 진술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교육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수준이나 도달점을 의미하는 교육목표의 진술방식으로서는 전연 타당하지 않다. 승가대학의 “선과 염불의 실수”, 학림의 “특정 불전과 어록의 체계적 연구”, 승가대학원의 “불교학, 불교사상의 전문적 연구”, 울원의 “율장의 전문적 연구”, 선학연구원의 “선학 연구” 등의 진술방식은 모두 교육방침에 대한 진술방식일 수는 있어도 교육목표의 진술방식과는 전연 거리가 멀다.

2. 승가교육의 내용과 운영

1) 행자교육원

[운영의 현황과 문제]: 행자과정의 수학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행자교육원에서의 교육기간은 3주 내지 5주로 하고, 행자교육원장은 필요에 따라 1주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증감할 수 있으며, 년 2회 실시한다. 그리고 그 교육 내지 교역자는 율원(律院) 출신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행자교육원장과 선학(禪學), 경학(經學), 습의(習儀), 예식(禮式)을 강의하는 전문교수와 사감 및 감찰(監察)의 임

무를 지닌 자로서 찰중(察衆)으로 구성된다(조계종 법령집: 교육법 제57-제59조).

행자교육원에서의 행자교육 배출자는 1991년 8월에 제1기 남행자 125명과 여행자 148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이래 1998년 3월 현재 제14기 남행자 98명과 여행자 78명을 배출하여 총 남행자 1,644명과 여행자 1,516명 합계 3,160명의 행자를 배출해 냈다(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기2542. 1998: 58의 행자교육연역표). 교과과정은 사미율의(沙彌律儀)나 사미니율의(沙彌尼律儀),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 부처님 생애, 예식의론, 위의문 등의 강의와 실수(實修) 등 매우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근래 종단에 교육원이 독립되어 출발한 이후 행자가 입산하면 그 등록에서부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부에서는 행자교육원의 교재로 “해행예경집(解行禮敬集)”과 “행해입문(行解入門)”을 개발하여 출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전연 없는 것도 아니다. 점차 행자들의 고학력화 추세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필요성, 출가자의 자격에 있어 원하는 자에게는 문호를 개방해 온 불교의 전통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저학력과 고연령에 대한 제한 필요성, 종단 상설의 기초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운영 때마다 교수사(教授師)와 습의사(習儀師)를 위촉하는 데 따른 운영의 진행에서 야기되는 차질, 본말사에서 교육과정의 부실, 3-4주간 정도의 행자교육원에서의 집중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교육기간,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상설의 교육장(教育場)이 없다는 현실 등의 문제가 이미 교육원 자체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기2542. 1998: 25-26).

2)승가대학

가)중앙승가대학교

[특징]중앙승가대학교는 정부의 교육부 정식인가를 받은 4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모든 학사운영이 세속의 일반 대학과 같다. 단, 세속의 타 대학과 다른 특이한 사항은 “대중청규(大衆淸規)”라는 것이 있어 “학칙 제9장 규율·포상·징계” 가운데 “제42조(규율 준수)”에서는 “학생은 본 학칙 및 대중청규를 지키고 전심성의로 학업에 임하며, 승려의 덕성을 길러 중생을 구제할 실천력을 구비하기 위한 학생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징계)”에서는 징계의 대상

제1항을 “학칙 및 대중청규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中央僧伽大學校, 佛紀 2542. 1998: 학칙). 그리고 “대중청규”에서는 이 “대중청규”의 목적을 “본 대학 대중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화경정진(和敬精進)하고 지·덕을 닦아 모든 중생이 귀의할 수 있는 승려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못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적학인(在籍學人) 전원이 “수행관(修行館)”에 입관(入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장삼과 가사를 갖춘 아침과 저녁의 예불, 아침 예불 다음의 참선, 공양과 운력시간의 엄수, 외부인의 수행관 출입 엄금, 외박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中央僧伽大學校, 佛紀2542. 1998: 대중청규). 다시 말해서, 사원에서의 수행생활(修行生活)에 준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승가대학=강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원에서의 구체적인 수행생활이 어떤 것인가는 다음의 “나”승가대학(강원)의 [매일의 일과]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단, 중앙승가대학은 도시에 있기 때문에 아침 예불의 시간이 산중의 전통적인 사원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좀 다를 뿐이다. 이 중앙승가대학교에는 1998년 5월 현재 320명이 재학하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기2542. 1998: 60의 각급 교육기관 현황).

[교과의 내용과 운영]은 세속의 일반 대학과 동일한 바, 전공은 1998년 현재 불교학, 역경학, 포교사회학, 사회복지학의 4전공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1998년 현재에 의하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크게 교양교육과정과 수행교육과정 및 전공교육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교양교육과정은 교양공통필수와 교양선택 및 외국어 선택의 3영역으로 구분되며, 수행교육과정은 각 학과 공통필수이고, 그리고 전공교육과정은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의 3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공통교양필수과정으로 (1)국어 I · II, (2)영어 I · II, (3)인도철학사, (4)종교학개론, (5)사회학개론, (6)한국사, (7)서양철학개론, (8)컴퓨터학습 I 인 바, 여기에서 (2)영어 I · II와 (8)컴퓨터학습 I 만 주당 2시간씩 1학점이고 다른 과목은 모두 주당 2시간씩 2학점으로 누구나 이들 과목은 모두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양선택과정에는 (1)동양철학개론, (2)논리학개론, (3)불교와 민속, (4)세계문화사, (5)심리학개론, (6)불교사회학, (7)불교윤리학이 각각 2시간 2학점씩이다. 그리고 (8)체육 I · II가 주당 2시간씩 1학점으로 되어 있다. 이 모두는 말이 선택이지 전 과목 다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어 선택의 경우 1학년 1·2학기에 걸쳐 한문

I · II, 일어 I · II, 범어 I · II 가운데 매학기 1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학년에는 1년간 한문Ⅲ · IV, 일어Ⅲ · IV, 범어Ⅲ · IV, 영어회화 I · II, 팔리어 I · II 가운데 매학기 2이상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3학년 때에는 1년간 영어원서강독 I · II, 일어원서강독 I · II, 범어불전강독 I, 범어불전강독Ⅱ, 영어회화Ⅲ · IV, 일어회화 I · II 가운데 매학기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4학년에서는 1년간 자유선택으로 영어원서강독Ⅲ · IV가 주당 2시간씩 2학점이다. 이 외의 모든 외국어 선택은 다 주당 2시간씩 1학점으로 편성되어 있다. 한편, 수행(修行)필수과정으로 전공에 관계없이 모두 1학년 때에 (1)불교학개론 I · II, (2)실천불교 I · II(修行習儀, 儀式作法 I), (3)실천불교Ⅲ · IV(儀式作法Ⅱ) 가운데 1과목을 선택으로 이수한다. 그리고 2학년에서는 (1)좌선실수, (2)인도불교사, (3)불교문화사, (4)교단사, (5)중국불교사 전체를 전공과 관계없이 모두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3학년에는 (1)좌선실수, (2)대승불교개론, (3)한국불교사, (4)불교교리발달사, (5)조계종사를 역시 전공과 관계없이 모두 전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나아가 4학년에는 선사상사를 역시 전공과 상관없이 이수한다. 전공교육과정에서는 전공에 따라 정해진 전공 기초과목을 1 또는 2개 과목씩 필수로 이수한다. 전공필수과정에서는 14 또는 15개 과목 모두를 이수해야 된다. 그리고 전공선택은 매학기 1개 또는 2개 이상의 전공 선택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검토]: 일견(一見)하여 교과과정이 양적으로 대단히 많고 그 운영에 있어 경직성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여기에서 경직성이란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고 대부분 필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교양공통필수과정이 8개과목이고 교양선택과목도 8개과목인 바, 이 8개의 선택과목도 전과목을 다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다. 외국어 영역도 학기에 따라 매학기 1 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한다. 전공기초과목도 전공에 따라 1개 또는 2개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다가 전공필수가 무려 14 또는 15개 과목이나 되는가 하면, 학기에 따라 매학기 1 또는 2개의 전공선택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더욱이 전공과 관계없이 수행필수과정으로 12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너무나 좁다. 전공과정이나 수행과정이나 세분화된 모든 영역을 다 망라하기보다는 좀 더 큰 영역으로 묶어 집약적으로 개발하고 이와 함께 세속의 여러 학문을 불교

적인 입장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교양과정에 자연과학과 신학(神學)이 없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자연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승속을 막론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세계화의 시대라는 점과 더불어 세계에 유례가 드물 만큼 다종교사회인 한국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종교학개론으로는 부족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나)승가대학[講院]

[교과과정]은 (1)사미과(沙彌科), (2)사집과(四集科), (3)사교과(四教科), (4)대교과(大教科)의 4단계로 되어 있다. 사미과에서는 고려 지눌(知訥: 1158-1210)의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⁹⁾과 신라 원효(元曉: 617-686)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¹⁰⁾ 및 고려말 조선초 야운(野雲: 生沒年代 未詳)의 “자경문(自警文)”¹¹⁾ 그리고 중국 명대(明代) 여근(如聿)의 선가(禪家)의 “치문경훈(緇門警訓)”¹²⁾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집과에서는 중국 당대(唐代)의 규봉종밀(圭峯宗密: 780-814)의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 송대(宋代) 대혜종고(大慧宗杲: 1088-1163)의 “대혜서장(大慧書狀)”, 고려 지눌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並入私記)”, 송명대(宋明代) 고봉원묘(高峯原妙: 1238-1295)의 “고봉선요(高峯禪要)”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¹³⁾ 그러나 사교과의 경우 수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반야경, 원각경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편 대교과에서는 화엄경과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과 고려 혜심(慧諡: 1178-1234)의 “선문염송(禪門拈頌)”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 화엄경을 보는 정도로 끝난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러한 과정을 다 이수하고 나서 개인의 뜻에 따라 더욱 연구할 사람은 격외과(格外科=隨意科)라고 하여 법화경(法華經)을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격외과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9) 일반적으로 줄여서 “초심(初心)”으로 통칭(通稱)한다.

10) 보통 줄여서 “발심(發心)”으로 통칭하고 있다.

11) 위의 계초심학인문과 발심수행장 및 자경문을 합쳐서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이라는 책명(冊名)으로 합본(合本)하여 간행되고 있다.

12) 흔히 “치문(緇門)”으로 약칭(略稱)되고 있다.

13) 이 사집과의 교과들은 일반적으로 각각 도서(都序), 서장(書狀), 절요(節要), 선요(禪要)로 약칭되고 있다.

[매일의 일과]: 1998년 5월 현재 지방의 승가대학은 통도사 승가대학[講院]을 위시하여 15개 대학에 984명이 재학하고 있다. 새벽 3시에 “도량석(道場釋)”¹⁴⁾으로 시작되어 짧게는 30분 내지 1시간 이상 아침 예불(禮佛)을 한다. 이어서 당해 사원의 전통이나 도량의 성격에 따라 참선, 독경, 염불, 송주(誦呪), 정근(精勤) 등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정진(精進)한다. 여름과 겨울에 따라 1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으나 대략 5시 혹은 6시경에 장삼과 가사를 갖추고 아침 공양(供養)을 30분 내지 1시간 동안 함께 한다. 7시 늦어도 8시가 되면 선방(禪房)에서는 입선(入禪)하며, 강원(講院)에서는 학장(學長) 이하 전 교수(講主와 中講=仲講)와 전 학인(學人)이 학교에서의 조례(朝禮)에 해당하는 “상강례(上講禮)”로 강(講)이 시작된다. 11시 정도에 역시 장삼과 가사를 갖추고 점심공양을 하며, 오후 2시 정도에 다시 참선 또는 강(講)이나 자율학습이 계속된다. 오후 5시 내지 6시경에 평복(平服)으로 저녁 공양을 하고 6시 내지 7시 정도에서 저녁 예불을 한다. 이어서 참선이나 독경 또는 송주나 염불 혹은 자학자습을 한다. 취침은 저녁 9시에 한다.

[교과의 운영]은 전통적으로 독서파(讀書派)와 간경파(看經派)로 구분하여 상이(相異)하게 운영된다. 다시 말해서 “읽는 그룹”과 “보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달리 운영되고 있다. 사미과와 사집과는 “읽는 그룹”으로, 그날 학습한 내용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반복해 소리내어 읽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상강례가 끝나고 강(講)시간이 되면 전날 배운 것을 교수 앞에서 암송한 다음 그날의 과업에 관한 수업이 시작된다. 이와는 달리 사교과와 대교과에서는 “보는 그룹”으로서 “논문강(論問講)”

14) 도량석(道場釋): 일반적으로 법당을 관리하는 이른바 노전(爐殿) 또는 부전(佛殿)이, 그렇지 않으면 학인(學人)들이 윤번제로, 새벽 3시의 도량석이 시작되기 최소한 30분 이전에 일어나 양치와 세면을 한 다음, 장삼과 가사를 갖추고 송주(誦呪)나 게문(偈文) 또는 경전을 천천히 독송하며 목탁을 치곤 한다. 그러면서 법당을 중심으로 하여 사찰(寺刹)의 경내를 두루 도는 바, 이를 도량석 또는 목탁석(木鐸釋)이라고도 한다. 문헌적 전거는 찾기 어려우나, 도량석은 기상시간을 알리고 도량을 결계(結界)하여 청정하게 하는 의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량석(道場釋)에서의 “석(釋)”이 “풀다[解]” 또는 “열다[開]”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기에는 산천의 초목이나 대소의 짐승들과 미물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점차 기운을 차려 생동성을 회복하기 시작하라는 배려도 깃들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 도량석의 시간은 대체로 빨라서 20 내지 30분 정도 한다. 사찰내 다른 대중들은 이 도량석을 듣고 기상하여 역시 양치와 세면을 한 다음 장삼과 가사를 갖추고 법당에 들어가 불전에 조용히 앉아 예불시간을 기다린다.

이라는 독특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보는 그룹”의 학인들은 장삼과 가사를 갖추고 침묵한 가운데 정좌하여 다음의 예정된 경전의 과업을 위해 “간경(看經)”한다. 이 간경은 그 자체가 명상의 성격을 지닌 자학자습의 연구이다. 따라서 해당 경전에 대한 여러 선학(先學)들의 이른바 “사기(私記)”들도 참고하면서 철저하게 탐구한다. 그 다음 동료 학인들 사이에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이른바 논강(論講)으로 들어간다. 이 논강은 추천에 의해 중강(重講=仲講)과 발기(發起)를 뽑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하여 중강의 주재 아래 발기가 자신이 간경(看經)한 바에 따라 글을 읽고 번역하면서 그 내용을 해설해 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각자 간경한 바에 따라 이견이 나오게 되며, 이에 따라 토론이 전개된다. 심할 경우에는 격렬한 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 논강이 끝나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로 동료학인들이 함께 교수 앞에 나아가 “문강(問講)”이 시작된다. 학인들은 함께 합장하여 교수에게 3정례(頂禮)를 하고 앉으며, 발기가 동료학인들을 대표하여 논강한 바에 따라 글을 읽고 번역하면서 해설해 나간다. 이와 동시에 논강에서의 논란의 내용이나 결과도 보고한다. 교수는 이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그러한 견해의 근거나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재정(裁定)을 한다(蔡印幻, 1986: 28-31; 朴先榮, 平成10: 76-77). 이를 연구자는 “자학자습의 간경(看經) → 논강(論講) → 문강(問講)의 교수-학습 체제”라고 명명(命名)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수-학습체제”는 한국 불교사에서 매우 오랜 전통을 지닌 것으로서,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그 원형은 통일신라시대 중국 당나라의 신라인 거류지역에 있었던 신라의 사원 적산(赤山) 법화사(法花院)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교육내용 내지 교육과정에서 매일의 일과는 대단히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과운영에 있어서 “읽는 그룹”과 “보는 그룹”으로 나누고, 보는 그룹에서는 “자학자습의 간경(看經) → 논강(論講) → 문강(問講)의 교수-학습 체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모형이 한국불교사에서 이미 839년에 운용되고 있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더욱이 그 운영이 단순한 이론의 탐구가 아니라 그 이론이나 사상을 넘어서서 그 이론이나 사상의 의미세계를 관조하는 차원에까지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 된다. 이점은 현대의 교육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론적 이성과 체험적 관조의 이성을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교적이면서도 탁월한 새로운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으로 평가될 만한 방법이라

하겠다. 또 조계종이, 이미 살펴 보았거니와, 본질적으로 선종인 점을 생각하면 선의 입장에서 경론을 이해하도록 구성된 교과과정은 그 나름대로는 오늘날의 교육학적 안목으로 보아도 별다른 하자는 없다 할 수 있다.

※[검토]: 앞에서 살펴 본 교과구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한 눈에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은 교과과정 전체가 선(禪)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사미과의 초심은 출가를 결심한 초입문자들에게 주는 글로 출가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과 마음가짐 및 행위의 규범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발심은 수행자들에게 분발하여 수도에 정진할 것을 깨우치고 있는 글이다. 자경문은 출가자가 수행하면서 항시 자기자신에게 경책(警責)해야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미과의 치문과 사집과의 네 가지 교과는 모두 선승들에 의한 저술이다. 이 가운데, 규봉종필의 도서와 지눌의 절요는, 역시 지눌 자신이 선(禪)의 입장에서 선교일체(禪敎一體)를 제창하면서 선종계에서 널리 독습되어 온 것이라 하겠다. 사교과 또한 대체로 선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거나 선사상의 이해에 도움이 될지하다고 선승들에 의해 판단된 것이라 할 것이다. 통일신라말부터 고려를 거쳐 근세조선에 이르기까지 화엄이 교종을 대표해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더욱이 이 화엄은 지눌에 의해 사상적으로 선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천명되기도 했다. 따라서 대교과에 화엄이 채택된 것 또한 한국불교사상사의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위와 같은 교과과정은 선의 이해를 위한 교과과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출가승려가 됨에 있어 명심해야 할 사항들을 깨우치는 초발심자경문에 이어 여러 선사들의 글을 읽고 난 뒤에 불교의 경론을 이 선의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교과의 구조는 조계종이, 종헌에도 종지로서 천명된 바 있거니와, 본질적으로 선종임을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매우 타당하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법에 명시된 승가대학의 목표와는 많은 점에서 부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교과로는 “원시경전과 대승경전을 망라한 체계적인 경전교육”이나 “역사와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불교적 시각과 방법으로 조명하고 해결하는 교육”, 또는 “수행자로서 필요한 일반교양과정의 이수” 등의 교육목표를 전연 기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교과운영은 매우 합리적이고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매일의 일과 운영도 참으로 초세속(超世俗)의 승가교육답다고 해야 할 것이다.

3)전문교육기관

이미 살펴 보았듯이, 전문교육기관에는 학림(學林), 승가대학원, 율원(律院), 선학연수원(禪學研修院)이 있다. 1998년 5월 현재를 기준으로 그 현황을 보면 학림, 율원, 승가대학원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학림의 경우 화엄학림에 11명 그리고 능엄학림에 7명이 재학하고 있다. 또 율원의 경우 영산율원과 해인율원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각각 5명과 6명이 재학하고 있다. 또 승가대학원으로는 승가대학원과 운문비구니승가대학원이 개설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12명과 6명이 재학하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기2542. 1998: 60의 각급 교육기관 현황). 이런 점에서 보면 전문교육은 아직 충분히 분화하여 다양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예컨대 학림 하나만 보더라도 화엄경 또는 능엄경 전공의 학림 뿐이라는 것은 그만큼 다양성을 결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전문교육기관 재학생 전체의 수가 47명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뿌리를 내리기에는 다소 시간이 요할 듯하다. 종단의 전문교육에 관한 다양한 계도와 승가풍토의 쇄신 및 유인체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계종은 본질적으로 선종임에도 불구하고 선학연수원은 아직 제도만 있을 뿐 개설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다.

4)중앙연수원(中央研修院)

최근 재교육의 연수실시 현황을 보면 95년에는 본사주지 및 중진스님의 연수, 비구니 중진스님의 연수, 전국 본말사 주지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96, 97, 98년의 전국 본말사 주지연수가 실시되었으며, 97년의 주한 외국인 스님 연수가 있었다. 확실한 주관처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중앙연수원의 주관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교육내용은 주로 종무행정, 계율, 지방자치, 포교, 신도조직, 성보관리, 사회복지, 통일 관련문제, 환경문제, 법률상식 등의 강의와 주제별 토론으로 되어 있다. 또한 주제별 연수도 모색되어 전산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참가 대상자의 참가율과 수료율이 전반적으로 70%를 밑돌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 하겠다. 이

밖에도 독립된 중앙연수원의 교육장이 아직 없고, 전문인력의 확보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은 교육원 자체 내에서 문제점으로 이미 제기되어 있다(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기2542. 1998: 28-30).

5) 특수학교

앞서 “Ⅲ.현행 한국의 승가교육제도” 가운데 “5)특수학교”에서 확인한 바 있거니와, 이 특수학교는 종도(宗徒)들에게 불교문학, 불교미술, 불교음악(현대음악과 범패), 불교건축 등 예술분야와 포교에 필요한 신문, 방송, 영상 등 전문분야에 관한 교육과 보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상설기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산작법학교(魚山作法學校) 하나 뿐이다. 이 학교에서는 습의과(習儀科)와 어산과(魚山科)의 두 과를 두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기2542. 1998). 보다 다양한 특수학교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IV. 현행 한국 승가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결론에 대신하여 -

이 연구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남성의 비구와 여성의 비구니가 되는 과정은 어느 사찰에 출가하여 출가공동체로서의 자급자족의 사원생활에 필요한 취사(炊事)와 세탁 등의 일과 함께 기초적인 불교의례를 익히는 최소한 5개월 이상 행자(行者)의 수련기간에 들어간다. 이 행자생활은 당해 사원의 주지나 예정된 은사스님 또는 대중스님들로부터 그만하면 출가수행자로서 자질이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하게 되어 있다. 견습승려로서의 남성의 사미와 여성의 사미니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종단의 교육원에서 주최하는 남녀별 행자교육원에 입원하여 행자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 이수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1998년 현재는 3주 내지 5주 전후이다. 따라서 행자교육의 6개월 원칙은 출가본사에서의 5개월과 행자교육원에서의 1개월을 합한 6개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매년 종단에서 지정한 사찰에

서 계단법(戒壇法)에 의거하여 엄정한 습의(習儀)의 과정을 거쳐 사미나 사미니의 10계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사미나 사미니가 된다. 사미나 사미니의 자격은 원천적으로 율장(律藏)에 근거하여 자격요건에 제한사항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이미 “II.승가교육의 역사”에서 살핀 바 있다. 현재 조계종에서는 사미나 사미니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15세 이상으로 학력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행자교육원에서의 행자교육 수료자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사미나 사미니가 비구나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승가대학교나 지방의 승가대학 또는 기초선원에 입학이나 입원을 하여 4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매년 종단에서 지정한 사원에 들어가 계단법에 따라 엄정한 습의의 과정을 거쳐 비구나 비구니의 구족계를 받게 된다. 단 비구니는 사미니로서 식차마나의 계를 받고 비구니의 준비과정으로서의 수학과정을 밟은 다음 비구니의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견습승려로서의 사미나 사미니가 되기 위해서는 출가본사(出家本寺)에서의 최소한 행자수련기간 5개월이상과 종단 교육원 교육부 주최의 행자교육원에서의 행자교육기간 5주 이상을 합하여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교육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사미나 사미니의 수계에서 4주 이상의 수계산림(受戒山林)의 교육기간을 합하면 실제에 있어서는 최소한 6개월 4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승려로서의 비구나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승가대학교나 지방의 승가대학 또는 기초선원에서의 4년간의 수학기간이 필요하고, 또 4주 이상의 구족계 산림의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출가 이후 승려로서의 비구가 되려면 최소한 4년 6개월 8주 이상의 교육기간이 요청된다. 그러나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는 비구니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의 2년간의 식차마나의 학습기간에 들어가기 위해 식차마나의 계를 받기 위한 최소한 하루 이상의 수계산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6년 6개월 8주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족계를 받기 위한 수계산림 기간에 식차마나계를 받은 다음, 바로 구족계를 받는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다.

한편, 종단의 교육법은 교육방침과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점이 한 눈에 보인다. 그리고 중앙승가대학교의 경우 교과과정이 양적으로 대단히 많고 그 운영에 있어 경직성이 두드러진다. 교과과정에서 세분된 각 영역을 망라하기보다는 집약적으로 개발하고 이와 함께 세속의 여러 학문을 불

교적인 입장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교양과정에 자연과학과 신학(神學)이 없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자연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승속을 막론하고 반드시 필요하며, 세계화의 시대라는 점과 더불어 세계에 유례가 드물 만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다종교사회로서의 한국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종교학개론으로는 부족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신학에 대한 이해도 갖추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지방의 승가대학은 선을 그 종지로 하고 있는 조계종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매우 타당하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법에 명시된 승가대학의 목표와는 많은 점에서 부합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치문은 물론이고 사집과의 대부분이 중국의 문헌인 것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교과운영은 매우 합리적이고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매일의 일과 운영도 참으로 초세속(超世俗)의 승려교육답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계종의 현실은, 과도기의 현상이라고 하겠으나, 비구나 비구니의 승려가 중앙승가대학교나 지방의 승가대학 또는 동국대학교의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예가 적지 않으며, 또 한편에서는 지방의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동국대학교의 불교대학이나 중앙승가대학교에 입학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중앙승가대학이나 동국대학의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지방의 승가대학에 입학하여 엄정한 일과운영 속에서 한문의 불교전적을 공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시간적으로 2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 현재의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앙승가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불교대학은 지방의 승가대학에 비해서 현대적인 학문방법에 의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승가대학은 전통적인 엄정한 일과 속에서 한문의 원전을 상대적으로 의미에서 철저하게 탐구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중앙의 교육원에서는 중앙승가대학교를 중심으로 통합하려 하나 지방의 승가대학은 무엇 때문에 서양식의 세속학제를 따라야만 하는가 하는 입장에서 교육원의 이러한 입장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연구자로서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수학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어떤 방안이 효율적이며 승려의 앞으로의 보다 깊고 넓은 탐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미나 사미니는 일단 중앙승가대학에서 수학하도록 하고, 지방의 승가대학은 한문의 경전교육을 특성화시켜 중앙승가대학교의 대학원으로 정부의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렇게 해야만 다른 나라에서 좀 더 새롭고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한 유학을 위해서도 학력의 호환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방 승가대학의 특성화는 지방의 각 승가대학에 따라 유식학, 천태학, 화엄학, 선학 등 특수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최근 지방의 강원이 종단의 법령에 의해 승가대학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일부의 지방 승가대학에서는 영어와 일본어 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는가 하면 대학에서의 교양강좌 수준의 특강을 인근의 대학교수들을 초빙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이는 곧 한말에 역사적으로 크나큰 국란과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종래의 많은 서당들이 새로운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변신의 일환이었던 개량서당체제로의 전환을 상기하게 하며, 이러한 전환은 불교의 강원들에서도 나타났었다. 그리하여 외국어와 외전의 교육이 도입되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보다 본격적인 전환과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전문교육기관이나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중앙연수원 그리고 특수학교 모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의 단계라고 하겠다. 새 종헌과 중요한 종법들이 종단의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수많은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1994년 9월 이후에 개정 공포된 것이라는 점 한 가지만으로도 이러한 연구자의 판단은 크게 잘못이 아니라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라 하겠다.

〈참고 문헌〉

T.1428 'vol.22' 四分律

見祖 三壇傳戒正範 初壇法儀.

見祖 三壇傳戒正範 三壇法儀).

見祖 三壇傳戒正範 弘戒毘尼.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2. 大日本佛教全書113.

台山 三壇傳戒內集.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불기2542: 1998). 僧伽教育, 2.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불기 2539: 1995). 대한불교조계종 법령집.

朴先榮(1981). 佛敎의 敎育思想. 서울: 同和出版社.

朴先榮(1990) 韓國古代의 佛敎와 敎育, **韓國思想史學**, 3. 서울: 韓國思想史學會.

박선영(1998).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의 이념과 방향.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연구기획단
편.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연구자료**, 1.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朴先榮(平成10). 韓國佛敎史における僧侶敎育とその現代敎育的意義. **日本佛敎敎育學研究**, 6. 東京: 日本佛敎敎育學會.

安震湖(1966). 釋門儀範. 서울: 佛書普及社.

李智冠(1976). 南北傳六部 律藏比較研究. 서울: 大覺會出版部.

李智冠(1977). 比丘尼戒律研究. 서울: 大覺出版會.

李智冠(1981). 韓國佛敎僧伽敎育의 史的 考察. **佛敎學報**, 18. 서울: 東國大學校佛敎文化
研究所.

一陀 編譯(1984重刊). 受戒儀範. 경남 합천: 海印寺出版部.

全海住(1986). 比丘尼敎團의 成立에 對한 考察 - 比丘尼八敬戒를 中心으로 - **韓國佛敎學**,
11. 서울: 韓國佛敎學會.

中央僧伽大學校(불기2542: 1998). 中央僧伽大學校要覽.

蔡印幻(1986). 韓國佛敎傳統講院履歷制度研究, **韓國佛敎學SEMINAR**, 2. 東京: 新羅佛敎
研究會.

행자교육원 교수단(1995). 解行禮敬集.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행자교육원 교수단(1996). 行解入門.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